

도서관 정보전문직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Copyright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Experts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윤 선 영*

Sun Young Yoon

차 례

- | | |
|-----------------|------------------|
| 1. 서 론 | 4. 정보전문직과 저작권 보호 |
| 2. 저작권법과 정보의 복제 | 5. 결 론 |
| 3. 도서관의 복사이용 현황 | • 참고문헌 |
| | • 첨부 : 설문지 |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 정보센터에서 정보를 복제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조사하였다. 동시에 정보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이해 정도와 저작권법 중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과 준수 현황을 검토하였다.

키 워 드

도서관 정보서비스, 정보복제, 정보전문직, 저작권법, 복제권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Lecturer,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onbuk Nat'l Univ., suny@isamin.com)

ABSTRACT

This paper has attempted to identify use status of information reproduction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At the same time, it investigated how information experts understanding about the copyright protection and information experts' knowledge to relate items of the copyright law.

KEYWORDS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Information Reproduction, Information Expert, Copyright Law, Copyright

1. 서 론

지식과 정보의 저장 및 전파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의 역할은 디지털 시대에서도 그 본래의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 도서관은 지식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고 저장하는 공간이므로 사회와 경제의 지식정보화가 심화될수록 그 사회적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던 시절에 일반 시민들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라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탄생한 도서관은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이제는 단순히 책의 보존과 대출기능 뿐만이 아니라 지식기반 경제의 원자재라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기능을 지닐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전으로 도서관 소장도서의 이용량과 이용빈도가 과거 아날로그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증대하고

이용방법이나 형태도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도서관 정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용될 수 있는 환경임을 고려할 때 변화의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도서관의 정보이용을 둘러싼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기술의 발달이 멈추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자와 도서관, 그리고 이용자간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의 2)을 신설·부여하면서, 제28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상호간에 도서 등을 복제·전송함에 관련되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서 베른협약 등 우리 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저작권 국제조약의 위반소지가 높

다는 것이 학계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 이유는 도서관이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도서관 상호간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제한한 것인데,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저작물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전국 12,000여 개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송을 허용한다면, 해당 저작물을 소장할 필요가 있는 나머지 도서관에서는 그 도서를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이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권리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통한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저작권법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도서관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제한되어야 하며, 출판에 영향을 주는 정도까지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서의 출판 내지 창작의욕을 저하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환경의 변화는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 제정이 필요한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이런 시점에서, 저작물에 해당하는 정보를 직접 다루는 정보서비스 전문직은 저작권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저작권료 부과에 관한 도서관 등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먼저 도서관 등이 이용자에게 허용하는 도서 등의 복제와 전송에 관한 개념을 정리한다. 그리고 도서관 등에서 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 전문가의 정보 이용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저작권법과 정보의 복제

저작권은 이른바 '배타적 권리'라고 하지만, 저작권법상의 배타적 권리가 그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의 배타적·무제한적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배타적 권리임을 기회로 비합리적, 몰상식적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 비난은 물론이거니와 권리남용의 소지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배타적 권리가 작용하는 공간이 도서관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중 하나로 명시한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면책을 허용하는 대상 도서관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이라고 정의하고, 동 시행령 제3조에서는 '도서관 등'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였다.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의 보
존· 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
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하지만 위에 제시한 도서관 등은 저작
재산권 중 기존의 복제권에 관한 권리만을
제한하는 도서관을 지정한 것이며, 신설된
전송권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은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
한 도서관들은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복제권
(저작권법 제28조 1항)에 관한 권리제한을
허용받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복제 대상 정
보도 어문저작물이 대부분일 수 있다. 저작
권법 상에서 '도서 등'이 의미하는 것은
어문저작물이 주 대상이 될 것이나 미술저
작물, 음악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도서
나 문서 등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는 것
이면 모두 복제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1 복제권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정의>에는 “복제
는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
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악
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
는 그 저작물의 공연·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
의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복제를 정의한 내
용 중 '유형물'의 범위에는 개인용 컴퓨터
나 웹서버의 기억장치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억장치에 저작물을 고정하는
이른바 '디지털화(digitalization 혹은 digit-
ization)'도 복제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복제는 크게 아날로그 복제와 디지털
복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을 선
택하여 복제하는가에 따라 저작권자의 경
제적 이해관계나 이용자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아날로그 복제

현행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
구에 의해 도서 등의 아날로그 형태의 저
작물을 복제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조사·
연구 목적이어야 하고, 당해 도서 등의 일
부분에 한하며 1인 1부만을 복제할 것을
전제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개정
안 제28조 제1항 제1호). 그러므로 도서관
은 이용자가 조사·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디지털 복제물을 제공하거
나, 도서 등의 일부분을 초과하는 정도를
복제이용에 제공코자 하거나 또는 1인에게
2부 이상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리처리를 하여야 한다. 한국복
사전송권관리센터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 제4조는 동 센터의 허락 범위
를 저작물의 “소 부분”에 대한 “소 부수”
의 복사 및 전송을 허락할 것으로 하고 있
으나, 도서관에서의 1인 1부 및 일부분 복
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복제에 대해서만 적
용된다. 도서관이 제공하는 어문저작물의
원문(原文)정보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당해 및 다른 도서관이 자신의 이용자에게

이를 종이 등으로 출력하여 이용토록 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도서관)의 복제행위에 대해 개정안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저작권(복제권)의 영향을 받도록 하였다.

만일 개인 이용자가 가정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의 영향을 받게 되는가? 이 경우에는 저작권과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개인 이용자가 가정 등과 같은 장소에서 도서관의 원문정보 웹서비스를 인쇄출력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가 아닌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개인의 가정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행위이지만, 개인적 목적으로 하는 복제가 아니라 영리목적의 경제행위의 과정으로 기업의 연구실이나 사무실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디지털 복제

현행 저작권법 제28조 제2항은 도서관이 당해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디지털화(디지털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면 그 이용자는 서가(書架)나 도서 목록을 일일이 찾는 수고를 할 필요없이 컴퓨터 단말기에 앉아 원하는 도서의 서지 정보는 물론 원문까지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일지라도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디지털 복제를 하고자 할 때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도서관들이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자 할 때 모든 도서관이 디지털화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복제권)의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저작권법에 이 문제를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둔다면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이 용이해지고, 국민의 정보습득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이 관내 열람을 위해 복제한 디지털 형태의 어문저작물을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경우에 디지털 복제에 관한 권리처리가 필요한가가 의문일 수 있다. 이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도서관 등이 저작물을 전송하기 위하여 웹 서버에 저작물을 업로딩하는 행위에 있어서, 전송권만 작용하는가, 아니면 전송권 이외에 복제권도 작용하는가? 이런 경우에는 도서관 등이 저작물을 웹서버에 업로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제권과 전송권이 모두 영향을 주게 된다. 서버에 자료를 업로드하는 행위가 복제와 전송이라는 두 개의 법률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권리에 대한 권리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업로드'라는 현실의 행위는 1개의 행위이지만 법률적 평가는 복제행위

와 전송행위라는 2개의 법률행위인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복제·배포권만을 양도하였다면 전송권자와 복제권자가 각각 다른 것이며, 이 경우 전송권자의 허락만으로 업로드가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도서관에서의 복제·전송은 보통 복제행위자와 전송행위자가 동일인(도서관)이며 복제권자와 전송권자가 동일인인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전송권의 권리처리로 충분하다.

2.2 전송권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정의>에는 “전송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도서관 등이 행하는 도서 등의 전송”이라 함은 디지털화(복제)한 도서 등을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웹 서버에 올리는 행위(uploading)와 디지털화한 도서 등을 이메일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방법을 통해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업로딩과 송신은 현실에 있어서 명백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즉, 웹서버에 업로딩된 도서 등이 이용자가 다운로드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된 것이라면 이는 송신한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저작권법상 전송의 개념이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와 “송신”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저작권법상 평가가 다를 수 없는 같은 “전

송”이라 하여도 전송된 자료는 그 이용방법에 따라 저작권자나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다. 현재까지 알려진 업로딩된 자료의 이용방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형태의 파일 자체를 웹 페이지에서 직접다운 로딩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인터넷상 대부분의 자료가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 개인에게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예컨대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받아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둘째, 디지털 파일의 다운로드를 불가능하나 인쇄출력의 방법으로는 이용이 가능한 경우이다. 미국 Adobe사의 PDF 파일이 전형적인 예로 각종 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가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에 흔히 이용된다.

셋째, 화면현시의 방법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디지털 파일의 다운로드를 물론 화면의 내용을 인쇄형태로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상의 세 가지 경우 즉, “다운로드”, “인쇄출력”, “화면현시”의 경우를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현실적으로 위의 첫 번째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자나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당해 도서 등의 판매기회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송의 방법에 의한 이용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나 허락을 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처리는 첫 번째나 두 번째의 경우와는 다르게 요구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

서 전송권에 관한 권리처리는 위의 세 가지 이용방법별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3. 도서관의 복사이용 현황

본 연구는 정보 전문직이 도서관에서 정보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는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였다. 그 중에서도 정보 이용자가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는 권리는 복제권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이해도 조사와 함께 도서관 이용자와 그 중 저작물을 복제 이용하는 범위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본 통계는 짧은 조사기간(2001년 11월 3주 동안)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 전 지역에 소재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는 대상 도서관을 공공도서관 30개관, 대학도서관 30개관과 전문도서관 20개관을 선정하였으며, 조사 대상 80여 도서관은 서울, 인천, 수원, 대전, 광주 등 5개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있는 도서관이 여타 지역의 도서관보다 정보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 도서관은 서울 및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민간 기업의 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하였다.

실태조사의 방법은 사전에 조사내용(설문지)을 첨부한 공문을 보내어 조사대상 기관에 협조요청을 의뢰하고, 저작권법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조사자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면담에 의해 설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자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로서 사전에 설문지의 각 항목 특히 저작권법과 관련한 항목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후에 해당 기관의 담당자와 직접 면담하여 설문지의 각 항목별로 필요한 설명을 추가하면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조사 내용은 도서관 이용자 및 복사이용 현황, 복사와 관련하여 도서관 직원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지식 정도를 알아보고 기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본 고에서 제시한 통계는 200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대상 도서관에 직접 방문한 이용자수를 월 평균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공공 도서관은 두 지역의 도서관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여 28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대학 도서관은 3개 대학이 직원 파업 등의 이유로 방문을 거부하여 27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고에서는 조사한 설문 내용 중 정보이용에 관한 항목과 도서관 직원의 저작권에 관한 관심 및 이해의 정도에 관한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3.1 도서관 이용자의 수

조사 대상 이용자의 이용범위는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방문 이용자로서 이용 목적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전체 대상 도서관의 월 평균 이용자는 약 25만명 정도이며, 그 중 약 20만명은 대학도서관 이용자임을 알

<표 1> 도서관 이용자 수

관 종 별	대상(관)	이용자 수(월/명)	관종별 평균(월/명)
공공 도서관	28	570 - 591,000	50,938
대학 도서관	27	979 - 550,000	192,483
전문 도서관	20	30 - 49,000	3,578

수 있다(<표 1> 참조). 정보 이용자가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학교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문 도서관은 특정 주제분야에 한정된 정보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 환경에서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현저하게 적은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조사대상 기관 중에서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전문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하였지만 교육 기능을 동시에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처럼 전 국민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곳과 각 지역 주민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과는 역시 이용자 수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도서관이 지역 사회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인

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3.2 도서관에서의 복사이용자 수

<표 2>의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정보를 복사하는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월 평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의 소장 정보를 복사하는 이용자는 월간 도서관 이용자 약 247,000명 중 약 10,303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에서 복사이용을 하는 빈도 역시 학생 신분의 주 이용자가 많은 대학 도서관이 단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조사대상 도서관들은 전체 이용자 수에 비해 복사이용을 하는 인원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2> 도서관 복사이용자 수

관 종 별	대상(관)	이용자 수(월/명)	관종별 평균(월/명)
공공 도서관	28	260 - 28,576	2,534
대학 도서관	27	82 - 11,130	4,901
전문 도서관	20	8 - 49,000	2,868

<표 3> 아날로그 복사이용자 수

관 종 별	대상(관)	이용자(월/명)	관종별 평균(면)
공공 도서관	28	20 - 25	500-200,000
대학 도서관	27	5 - 40	16- 7,500
전문 도서관	20	10 - 50	30- 1,250

3.3 도서관의 아날로그 복사 이용

도서관에서의 복사 이용량은 현 단계에서 조사대상 기관에 공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아날로그 정보의 복사 이용량을 월 평균 이용량으로 조사하였다(<표 3> 참조).

우리 사회의 현실은 도서관 이용에 따른 정보의 복제에 있어서 저작권법에서 주장하는 저작재산권(복제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직은 미약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환경의 변화는 정보 이용자가 점차 정보를 소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제를 하는 정도가 늘어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이용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문제는 개인이나 특정 기관 또는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

다. 특히 도서관은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며 이용에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그리고 이용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서 정보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정보 전문직으로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지식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정보 전문직과 저작권 보호

정보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복사를 하는 이용방법을 조사함과 동시에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복사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점과 담당 직원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표 4> 이용자 복사시 직원의 확인

관 종 별	대 상(관)	확인(비율)	가끔(비율)	무관심(비율)
공공 도서관	28	7	13	8
대학 도서관	27	1	3	23
전문 도서관	20	14	2	4
비 율(%)	75	19	28	53

4.1 이용자가 복사할 때에 직원이 확인을 하는지 여부

도서관 이용자가 소장 정보를 복사할 경우에 직원이 복사 대상 정보의 유형 및 복사량 등을 확인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이 통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필요한 문헌을 복사하고자 할 경우에, 담당 직원이 어떤 정보를 복사하는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반수 이상이 복사 이용량도 상관없이 복사를 하도록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 직원이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에서 복사를 허용하는 정도인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복사하는지, 또는 단순히 복사 여부만을 확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가 자신이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정보를 창작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보상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4.2 이용자에게 정보를 복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중 관계를 직원이 알고 있는지 여부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복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도서관 직원이 정보서비스 전문직으로서,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조사에서 ‘안다’고 한 것은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직원이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관’이라고 한 것은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곳 즉, 이용자가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정보를 복사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도서관 직원이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모른다고 응답한 3%와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조사대상자 중 26%에 해당하는 도서관에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재산권보호와는 상관없이 정보의 복사 이용이 허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표 5> 정보서비스 전문직의 저작권법 이해 정도

관 종 별	대 상(관)	안다(비율)	모른다(비율)	무관(비율)
공공 도서관	28	25	1	2
대학 도서관	27	15	1	11
전문 도서관	20	15	1	4
비 율(%)	75	74	3	23

설문조사 항목에서 저작권 관계를 안다고 응답한 74%의 경우도 도서관 등에서 정보를 복사하는 행위가 저작권법과 관련성이 있다는 정도를 알고 있을 뿐, 저작권법 관련규정(제28조)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식을 구비하여 이용자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다.

4.3 소장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을 아는지 여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할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 통계에 의하면, 도서관 직원의 90%가 도서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행위 즉, '전송'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를 복사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인지도 74%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이

그 대상기관은 제한적이지만, 저작물의 복사와 인터넷 제공서비스(저작권법상의 전송)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양 행위에 대한 인지도는 의외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복사가 복사기기의 대중화 이후 관습화되었다는 점에 비하여 전송은 최근 언론매체에서 접한 냅스터나 소리바다 등의 사례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도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4.4 기타 의견

도서관에서의 복제와 전송에 관련하여 조사대상 도서관 직원에게 저작권재산권에 관한 임의적인 의견제시를 요청하였는데,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4.1 공공도서관

- 1)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설립목적 이 정보이용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우선 센터가 신탁 받은 권리 혹은 저작물을 공개하고 센터가 복사실 또는 도서관 등

<표 6> 정보의 온라인 제공과 저작권법

관 종 별	대 상(관)	안다(비율)	모른다(비율)	무관(비율)
공공 도서관	28	27	1	0
대학 도서관	27	22	2	3
전문 도서관	20	18	1	1
비 율(%)	75	90	6	4

- 과 협상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추고, 비용은 투명하게 권리자에게 배분되고 있는지 공개하여야 한다.
- 2) 이용자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고 마음놓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은 사용료보다 정보의 편리한 이용을 요구한다.
 - 3) 도서관에서의 복사물은 학습자료이므로 건당 복사량이 많은 경우에 비용이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워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 4) 국민의 알 권리와 도서관의 공적인 면에서 특히, 공공도서관은 저작권 및 복사·전송면에서 예외의 특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5) 저작물의 사적 이용은 저작권법을 적용하되,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공중이용 측면을 감안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디지털 시대에 원문전송은 불가피하므로 현실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도서관에서 연구, 학습 및 참고 목적의 전송에 대하여 적정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4.4.2 대학도서관

- 1) 이용자들이 저작권료에 대한 의식이 전무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저작권료의 책정이 필요하다.
- 2) 복사 및 전송에 따른 저작권료의 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 및 공감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공지가 필요하다.

- 3) 저작권법의 공정사용(fair use)과 관련하여 제28조 1항을 해석함에 있어 제1호의 부문은 이용자 스스로 도서관내에서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복제를 함에 합당한 조건으로 허용됨이 올바른 생각이며, 도서관 이용자의 복제행위는 도서관내에서 조사 연구의 목적에 한하는 것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권리보호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본 원칙이 무시되어도 안되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저작권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 4) 저작권 제도를 체계화하는데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4.4.3 전문도서관

- 1) 저작권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통로 및 방법이 없다. 위법자가 되지 않도록 글로벌한 시스템 운영방법을 확보하여 주기 바라며,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에는 저작권의 면책을 부여하여 주기 바란다.
- 2) 저작권법이 너무 자주 변해서 혼동스럽다.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서는 간단한 복사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며,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예외가 되는 도서를 정하여 이용자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저작재산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4) 정보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은 우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본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 5) 넓은 안목에서 보았을 때 저작권제도 자체는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단 복제가 특히 심하기 때문에 저작권 제도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 6) 저작권 제도의 정착을 위한 명확한 규제 및 홍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5. 결 론

본고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설립에 따른 저작권료 징수·분배를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에 의해 이용하는 실태를 파악하고자 수행한 과제의 내용 중 정보 이용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정리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대상이 된 도서관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나라의 중심도시인 서울 및 대도시에 소재한 도서관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보의 이용빈도나 도서관 직원의 의식 수준에 있어서는 빈약한 조사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도서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서비스 전문직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보서비스 전문직의 입장에서 도서관의 복제가 허용되는 한계인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에서 ‘일부분’

의 범위 정의에 대하여 저작권 단체들과 도서관계의 명확한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각 도서관이 소장 정보를 복사하도록 하는 복사기의 운용에 있어, 대부분의 도서관이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제한하는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불분명하다. 이용자가 정보의 복제물을 원할 때 복사대상 정보 및 복사하려는 범위에 대하여, 여전히 도서관에서의 복사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생각이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상당수의 정보서비스 전문직들이 도서관에서 소장정보를 이용자에게 복사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정보를 복사할 때와는 다르게 정보를 온라인 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응답이 90% 정도로 높았다. 사회적 환경이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 이용과 저작재산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도록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사에 대해서도 이런 인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정보서비스 전문직은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지속적으로 정보가 창출되고 이용되는 순환과정이 되풀이하면서 정보 창작자와 이용자간에 사회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논란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정보의 창작행위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가 도

서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서비스 전문직으로 하여금 정보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교육자의 역할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보서비스 전문직은 누구보다 정보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문가로서 저작권법에 관한 지식도 누구보다 정확하게 습득하여야 한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바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희일. 1999. 위험수위 넘은 불법 복사·복제실태. 한국출판연구소 편, 『도서 불법 복사·복제 실태와 대책』 서울: 동 연구소.
- 高橋和之 外. 1999. 『インタ-ネットと 法』. 東京: 有斐閣.
- 권영선. 1999. 세계 지식공유시스템 사례와 한국 지식공유시스템 방안. (사)새문명아카데미 부설 한국지식공유센터 편, 지식공유 정책 세미나 『민간 주도 지식공유시스템 모색과 지식대국의 길』 주제 발표집.
- 김기태 외 2인. 1995. 『전국 도서 무단복사 실태조사』. 서울: 한국출판연 구소.
- 藤波 進. 1994. 情報ネットワークによる 著作権の管理. 『著作権法學會 著作権研究』(21).
- 半田正夫. 2001. 『著作権法概説』. 第10版. 東京: 一粒社.
- 北川善太郎. 1992. 『技術革新と知的財産法制』. 東京: 有斐閣.
- 산업연구원. 1998. 『저작물 사적복제실태 조사연구』. 서울: 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 1998. 『복사권집중관리기구 설립관련 실태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 산업연구원.
- 三山裕三. 2001. 『著作権法詳説』. 全訂新版. 東京: 東京布井出版.
- 相田義明·平嶋龍太·隅藏康一. 2001. 『尖端産業技術と知的財産權』. 東京: 發明協會.
- 송영식·이상정. 2000. 『저작권법개설』. 서울: 세창출판사.
- 野野村敏. 1989. 複寫權センターの設立·權利委託と複寫許諾について. 『著作権法學會 著作権研究』(16). 日本複寫權センター. 1997.
- 오승중·이해완. 2001.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 윤청광. 1995. 늘어나는 불법복제: 위기에 처한 저작권.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편, 저작권 세미나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방안」 주제 발표집.
- 이상정. 2000. 복사권 집중관리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검토. 『계간 저작권』(50)
- 이호흥. 1999. 『복사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보고서』. 서울: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 이호흥. 1999. 복사권집중관리기구의 한국적 적용과제와 사업전략. (사) 새문명아카데미부설 한국지식공유센터 편, 「국가지식공유 네트워크 운영 및 지식국가로의 이노베이션」 주제

- 발표집.
- 임원선 옮김. 1996. 『초고속 통신망과 저작권』. 서울: 한올아카데미.
- 著作権資料協會. 1978. 新しい複製技術への歐米諸國の對應. 『著作権シリーズ (56)』. 東京: 同協會.
- 著作権資料協會. 1984. 『著作権の集中的處理に關する調査研究協力者會議報告書』. 東京: 日本文化廳.
-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 편. 1995. 『제2회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 저작권 세미나: 복사권의 집중관리』 주제발표집.
- 황적인. 1998. "복사권의 저작권법상 보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편, 『제8회 문저협세미나(1988): 저작권 정보관리와 복제보상금제도』 주제발표 자료집.
- 黒田法律事務所?黒田特許事務所 編. 2001. 『デジタルコンテンツと知的財産権』. 東京: 日本能率協會.
- Aiken, Paul. 1995. Photocopy Royalty Collective in the United States.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 편, 『제2회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 저작권 세미나: 복사권의 집중관리』 주제발표집.
- Executive Board of KOPINOR. 1995. SUMMARY- Annual Report of the Executive Board of KOPINOR.
- Leaffer, Marshall. 1995. *Understanding Copyright Law*. Matthew Bender.
- Litman, Jessica. 2001. *Digital Copyright*. Prometheus Books.

11. 귀 도서관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① 진행 중이다 (자료의 유형 : 기구축 량 :)
② 계획 중이다 (예정 시기 : 년 월 예정)
③ 계획도 없다
12. 우리 저작권법 제28조 1항의 경우 이외에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복사 5원/전송 10원 (A4용지 1면 당)을 책정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가격 제안: 복사 원 / 전송 원)
13. 도서관(정보센터)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 제도 특히, 복사권 및 전송권에 대한 저작권료와 관련하여 제안이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참조 : 저작권법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 (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를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